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72 발의연월일: 2024. 11. 21.

발 의 자:유상범·엄태영·장동혁

곽규택 • 조배숙 • 김미애

유용원 · 서명옥 · 송석준

박형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·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·어가에 공급하는 제 도로서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제도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 고 있는 상황임.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와 동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「출입국관리법시행령」 별표1(단기체류자격), 별표2(장기체류자격)의 단기취업(C-4), 계절근로(E-8)자격 규정에 의존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임.

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. 이와 관련,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, 기본계획·도입규모·허용업종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협의체 설치·운영,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·운영 및 예산지원, 제도 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, 계절근로자 모집·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(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9조의5(계절근로 프로그램 등)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·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(이하 "계절근로자"라 한다)에 대한 도입·체류 등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프로그램(이하 "계절근로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,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(이하 "정책협의회"라 한다)를 두고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 -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 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고, 전문기 관의 지정·관리 및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 한다.
 -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 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(MOU)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
- 2. 계절근로자의 선발·입국·교육·체류·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정보통신망의 설치·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-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94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1의2. 제19조의5제7항에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9조의5(계절근로 프로그램 등)
	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
	있는 농·어업 등 분야에서 취
	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(이하
	"계절근로자"라 한다)에 대한
	도입・체류 등 관리 및 지원을
	위한 계절근로 프로그램(이하
	"계절근로 프로그램"이라 한다)
	을 시행할 수 있다.
	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
	획,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
	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
	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
	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
	로 정책협의회(이하 "정책협의
	회"라 한다)를 두고 정책협의회
	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
	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	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
	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
	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
	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
	근로 전문기관(이하 "전문기관"
	이라 한다)으로 지정·운영할

- 수 있고, 전문기관의 지정·관 리 및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사 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.
- 1.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 약(MOU)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
- 2. 계절근로자의 선발·입국· 교육·체류·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 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 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고, 정보통신망의 설치 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
제9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4조(벌칙) -----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11. (생략) <신 설>

12. ~ 20. (생략)

⑦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제3 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는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~ 11. (현행과 같음)
- 11의2. 제19조의5제7항에 위반 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,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는 행 위를 한 사람

12. ~ 20. (현행과 같음)